

의안번호	2203442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D33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3(수송시설 이용 지원)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1조의3(수송시설 이용 지원)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재 군인의 경우, 철도요금 등 수송시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할인율도 다르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군인이 KTX와 일반철도 이용시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55만 3,000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할인하였음

[표 1] 기차요금 할인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계		KTX		일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1	230	964	185	910	45	54
2022	597	2,048	437	1,898	160	150
2023	1,048	3,196	737	2,932	311	264
2024	553	1,650	383	1,504	170	146

자료: 한국철도공사

- SRT의 경우, 군인에 대해 5%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군인 할인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로, 장애인, 유공자 및 군인 등을 포함한 공공운임 감면¹⁾에 대해 2024년 2,296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음
- 개정안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의 수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 철도와 도시철도 요금을 할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군인에 대해 할인율이 낮거나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철도나 도시철도 요금도 할인이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운임 감면에 대한 보상이나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군인의 철도·도시철도 이용규모 및 할인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운임 감면에 대한 보상이나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PSO보상 사업(코드 :2736-301)의 내역사업임, PSO보상사업은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철도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